#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 린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 2022.03.29.]

- **이 공고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위하여 건설호수, 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격, 세대평면, 시공업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지구 및 단지의 주변 생활여건, 시공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접수처 운영 안내**
  – 현장접수처 방문은 당사가 정한 시간대별 방문 예약자에 한하여 방문이 가능하며 방문 예약 접수는 당사 홈페이지(ig2.lynn.co.kr)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 현장접수처 운영관련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현장접수처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전당첨자발표 이후 사전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사전공급계약 체결에 한해 현장접수처 입장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 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입장은 사전당첨자(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외 동반 1인으로 제한됩니다.
  **2. 현장접수처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현장접수처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현장접수처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사전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사전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인천 가정2지구 B2BL 우미 린 분양 상담전화(☎ 032-566-4700) 등을 통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분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팜플릿은 당사 홈페이지(ig2.lynn.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Ⅰ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현황

| 구 분 | 시행사(사업주체) | 시공사 |
|---|---|---|
| 상 호 | ㈜심우건설 | ㈜우미개발 |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81, 1001-1호(정자동, 폴라리스빌딩)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우산동) |
| 법인등록번호 | 200111-0185285 | 200111-0042568 |
| 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 경기-주택2006-0211 | 광주-주택2000-0004 |

※ 본 단지의 착공진행 시 시공사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Ⅱ 사전청약 및 사전공급계약 등 주요일정

| 구 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공급 | | | 사전당첨자 발표 | 사전당첨자 서류제출 | 사전공급계약 체결 |
|---|---|---|---|---|---|---|---|
| |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2순위 | | | |
| 일 정 | 04월 08일(금) | 04월 11일(월) | 04월 12일(화) | 04월 13일(수) | 04월 19일(화) | 04월 22일(금) ~ 04월 24일(일) | 05월 02일(월) ~ 05월 04일(수) |
| 방 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방문접수 (10:00~17:00) | 방문계약 (10:00~17:00) |
| 장 소 | • 사업주체 현장접수처<br>•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br>*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 | 당사 현장접수처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111 정석빌딩 4층)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Ⅲ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과 – 12598호(2022.03.29.)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내 B-2BL**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3층, 6개동, 총 308세대 중 사전청약 공급 278세대 [특별공급 172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27세대, 다자녀가구 27세대, 신혼부부 55세대, 노부모부양 8세대, 생애최초 5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추정 본 청약 시기 : 23년 3월 예정** ■ **입주시기 : 25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사전청약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 구분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 약식 표기 |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소계 | 기타 공급면적 (지하주차장 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사전청약 공급 세대수 | 사전청약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소계 | 사전청약 일반공급 세대수 | 저층 우선 배정세대 여부 |
|---|---|---|---|---|---|---|---|---|---|---|---|---|---|---|---|---|---|---|---|
| 민영 주택 | 2022520014 | 01 | 084.9577A | 84A | 84.9577 | 24.9577 | 109.9154 | 70.1069 | 180.0223 | 58.9900 | 125 | 12 | 12 | 25 | 4 | 25 | 78 | 47 | 배정 |
| | | 02 | 084.9640B | 84B | 84.9640 | 25.3330 | 110.2970 | 70.1121 | 180.4091 | 58.9944 | 134 | 13 | 13 | 27 | 4 | 27 | 84 | 50 | 배정 |
| | | 03 | 084.9753C | 84C | 84.9753 | 25.1986 | 110.1739 | 70.1215 | 180.2954 | 59.0022 | 19 | 2 | 2 | 3 | 0 | 3 | 10 | 9 | 배정 |
| | 계 | | | | | | | | | | 278 | 27 | 27 | 55 | 8 | 55 | 172 | 106 |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용도별 대지지분은 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주택공급면적, 기타공급면적,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은 추정분양가 심의 시 산정한 면적으로 향후 심의 결과 및 인허가 진행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는 경관심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로 추정분양가 심사 시 기준이 된 설계와 단지배치, 주택형, 세대수, 면적 등이 상이하며,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청약 시점의 실제 분양가는 사업승인 완료된 시점의 최종 설계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단지배치, 주택형별 세대수(건설호수 등), 주택공급면적(기타 면적 포함), 세대평면, 시공업체 등은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향후 경관심의, 건축심의, 사업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하고 다시 미달될 경우 사전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며, 다시 미달될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의 물량으로 전환됩니다.
– 저층 우선 배정 세대의 규모는 본 청약 시 확정될 예정입니다.

## Ⅳ 추정 분양가격

(단위 : 세대, 원)

| 약식표기 | 사전청약 공급세대수 | 추정 분양가격 대지비 | 건축비 | 계 |
|---|---|---|---|---|
| 84A | 125 | 265,613,190 | 323,786,810 | 589,400,000 |
| 84B | 134 | 265,632,886 | 296,367,114 | 562,000,000 |
| 84C | 19 | 265,668,215 | 304,331,785 | 570,000,000 |

– 상기 추정 분양가격은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용도별 대지지분은 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추정 분양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가전, 가구 등)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대지비의 경우 본 청약 시 사업계획인허가 및 지적정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정 분양가격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및 납부일정 등은 향후 본 청약 시 확정 후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청약 시 실분양가는 층별/타입별 보정치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Ⅴ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분(약식표기) | | | 84A | 84B | 84C | 합 계 |
|---|---|---|---|---|---|---|
|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 2 | 2 | 0 | 4 |
| | | 장기복무 제대 군인 | 1 | 1 | 0 | 2 |
| | 장애인 | 인천광역시 | 2 | 2 | 1 | 5 |
| | | 서울특별시 | 2 | 2 | 0 | 4 |
| | | 경기도 | 1 | 1 | 0 | 2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1 | 1 | 1 | 3 |
| | 중소기업 근로자 | | 1 | 2 | 0 | 3 |
| | 우수기능인 | | 1 | 1 | 0 | 2 |
| | 북한이탈주민 | | 1 | 1 | 0 | 2 |
| | 소계 | | 12 | 13 | 2 | 27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 6 | 7 | 1 | 14 |
| |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 | 6 | 6 | 1 | 13 |
| | 소계 | | 12 | 13 | 2 | 27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25 | 27 | 3 | 55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4 | 4 | 0 | 8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25 | 27 | 3 | 55 |
| 합 계 | | | 78 | 84 | 10 | 172 |

■ **특별공급 신청자격**

| | |
|---|---|
| 공통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br>•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br>–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Ⅵ 일반공급

■ **청약자격**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 구분 | 순위 | 주택형 | 신 청 자 격 | 거주구분 |
|---|---|---|---|---|
| 민영 주택 | 1순위 | 전용면적 85㎡ 이하 |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100% 적용<br>•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br>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br>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해당지역]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 충족이 가능한 자<br>[기타지역]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해당지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경기도, 서울특별시 거주자 |
| | | 1순위 청약제한 대상 |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br>① 세대주가 아닌 자<br>②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br>③ 2주택 (분양권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br>④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미만,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자 | |
| | 2순위 | 전 주택형 |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부금)에 가입한 자 | |
| | | 2순위 청약제한 대상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합니다. |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 구 분 | 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기도) |
|---|---|---|---|
| 전용면적 85㎡ 이하 | 2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4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7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Ⅶ 사전청약 관련 문의

| 대표번호 | 현장접수처 위치 | 홈페이지 | 비 고 |
|---|---|---|---|
| 032-566-4700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111 정석빌딩 4층 | ig2.lynn.co.kr | |

**본 공고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중요 정보만 제공됩니다.**

※ 입주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ig2.lynn.co.kr) 또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상세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현장접수처 및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